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58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이해식 · 이상식 · 윤준병
김영진 · 양부남 · 최혁진
노종면 · 박용갑 · 박상혁
박정현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제41조”를 “제49조”로, “지방의회의원”을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시·통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대표자인”을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u>지방의회의원</u>	6. ----- <u>제49조</u> ----- <u>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생략) ② (생략)	<u>역으로 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위원을 포함한다)</u> 7. ----- ----- <u>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u> 8. ----- -----<u>대표자이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u>-----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